

2. 미주 통관 및 관세

가. 주류 품목 중국 수입 관련 행정 사항

- <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법> 제3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, 국가공상행정 관리국, 위생부, 세관총서, 기술 감독국 및 수출입 상품검역국, 세무국 등이 수입주류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

[그림 2.19] 주류 품목 중국 수입 행정상 필요한 절차

주류품목 중국 수입 행정상 Check List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상무부 수입지역 경제무역위원회에 대외무역경영자 서류 등록서 제출, 자주 수출입 허가 획득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상무부에 주류 수입허가증 신청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위생부에 식품 위생허가증 신청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로컬 은행에서 신용증 개설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선박운송회사에 화물운송 예약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화물운송 회사에 화물운송, 세관 신고, 보험업무 위탁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항구 수출입검사검역국에 검역 신고, 서명 발급한 입국통관서류 접수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항구에 세관 신고, 세관신고서 증빙서류 접수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국가세무국에 세금지불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외환국: 수입 결제확인 처리

※ 출처: 국가질량검사검험검역총국 《신식품원료안전성검사관리방법》

[표 2.6] 중국 주류 품목 수입과 유관 기관 및 부서

주요 기관	주요 업무
세관	• 통관, 관세 등의 감독
위생부	• 위생 감독관리 업무 및 항구 위생 감독 검역 관리 • 위생증서 관리
품질감독검역총국 및 기술 감독국	• 막걸리 품질 감독
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국	• 시장상황 및 시장질서 감독
국가세무국	• 세금 징수 및 관리

※ 출처: 국가질량검사검험검역총국 《신식품원료안전성검사관리방법》

나. 미주 통관 절차

- 미주 수입 시 반드시 수출입 상품검역국에서 통관 서류를 발행해야 하며 통관 관련 각종심사 및 신고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

[그림 2.20] 미주 수입 통관 절차



※ 출처: 국가질량검사검험검역총국 《신식품원료안전성검사관리방법》

다. 미주 수입 시 필요한 절차

1) 수입업체 등록

- 수입 회사는 현지 상품검사검역국에 수입 미주 수령인 등록을 하고, 등록 번호(미주 도매증명서 혹은 미주 판매증명서가 있어야 함)를 받아야 함

2)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 업체 등록

- 《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》의 제 15조 조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 수출식품의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국가 출입국검사검역국에 등록해야 함
- 관련 규정 및 처리 방법: 질검총국은 《수입식품수출입업체등록관리규정》 및 《식품수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》에 대해 발표하였음

3) 상표 등록

- 등록번호를 얻은 후, 수입업체검사국에서 수입 미주 중문 상표를 등록해야 함. 이때 신청 자료 2부(상표심사신청표, 중문상표 샘플 종이 및 250k 이하의 전자판, 《사전포장식품상표통칙》(GB7718-2011)에 따라 관련 상품 상표 제작, 본래 상표 및 중문 번역본, 상품의 특정 속성을 반영한 증명자료 등이 필요함. (주의: 미주 수입 상표 등록은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-2주 전에 신청해야 함)

4) 검역

- 미주 상표 등록 후, 미주 검역이 이뤄지며 이때 제공되는 서류로는 무역계약/신용장, 출고증, 영수증, 화물 명세서, 원산지 증명서/생산판매 합법증명 원본, 중문 상표 검사 등록 관련 자료, 수출 국가 혹은 지역 정부의 검증서 및 외국식품위생증서 등이 있음
- 검사 서비스 및 영수 검사
-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업체 또는 대리상이 제출한 검역 신고 자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, 요구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고 검역을 할 것인지 결정 함. 그 후 검역 결정이 나면 검역 검사 비용을 받고 《수입화물 통관서류》를 발급해줌

5) 세금

- 통관신고서 발급 -- 세관 통과 -- 세금 영수증 발급 -- 수입 미주 수령인이 관세 및 부가 가치세 납부 -- 통관 허가 -- 해당 항구에 상품이 도착(예: 베이징 차오양 항구)

6) 상품 검사 및 샘플 검사

- 상품이 수입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, 상품검사국 검사업무과가 미주 검사 및 샘플 검사를 실시함. 상품 검사 후 해관 채널에 도착함(해관의 통제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)

7) 중문 상표

- 수입 미주는 반드시 상품검사국이 인정한 창고에 저장되며, 중문 상표가 미부착된 상품은 이 때 중문 상표가 붙여짐 (중문상표는 중국 상표등록 심사를 완료한 상표에 한하며, 창고에 보관시 주관부문의 감독 하에 수입대리상 혹은 제조상이 직접 상표를 부착함)

8) 결과가 나온 후, 합격한 상품은 《위생증서》가 발급됨

- 수입 업체/대리업체/판매업체/수령인은 합격한 《위생증서》를 발급받고 난 후 미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됨. 불합격한 상품은 “검사검역 처리통지서”를 발급받게 되며, 검사인은 처리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함

9) 상품 통과 후 수령인에게 도착

- 미주 수입의 상품 검사 절차:
 - 수입 미주는 반드시 중국 상품 검사국이 발행한 통관 신고서를 받아야 함
 - 입국 검사수속 : 주로 화물의 수량, 품종, 포장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
 - 검험검역 수속 : 화물이 입고하게 되면 상품 검사인이 현장에 와서 샘플 검사를 하게 되며 작업 시간은 20일정도 소요

라. 발효주 및 황주 중국 수입 세율

- 발효주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막걸리를 수입시 발효음료 혹은 황주로 분류하여 수입 세율상의 차이가 존재하였음
 - 중국 해관관계자 인터뷰 결과 중국 전역에 걸친 발효주 및 황주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는 동일
 - 다만, 황주와 발효주의 소비세 항목에서 황주(240위안/1톤)가 기타 발효주(10%)보다 저렴하여 황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음
 - 황주의 현행 세율(해관 코드 2206001000)
 - 관세: 40% (관세: CIF¹⁾ × 40%);
 - 부가가치세 : 17% (부가가치세 : (CIF + 관세액 + 소비세) × 17%) ;
 - 소비세 : 240위안/톤

1) CIF :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

- 수입 기타 발효 음료의 현행 세율(해관 코드: 2206009000)
 - 관세 : 40 % (관세 : $CIF \times 40\%$) ;
 - 부가가치세 : 17% (부가가치세 : $(CIF + \text{관세액} + \text{소비세}) \times 17\%$) ;
 - 소비세 : 10% (소비세 : $[(CIF + \text{관세액}) / (1 - 10\%)] \times 10\%$)
- 중국내 막걸리 수입상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13년부터 발효주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예전의 황주로 분류되어 수입되던 막걸리 수입형태들이 기타 발효주로 전환되고 있음
- 또한, 향후 발효주 수입 관련 관리감독 활동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황주로 분류되어 수입되는 사례들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

[그림 2.21] 수입 병(포장) 발효주 및 황주 현행 세율

기타 발효주	세관코드	• 2206009000	○	○	세관코드	• 2206001000	황주
	관세	• 40 % - $CIF \times 40\%$			관세	• 40 % - $CIF \times 40\%$	
	부가가치세	• 17 % - $(CIF + \text{관세액} + \text{소비세}) \times 17\%$			부가가치세	• 17 % - $(CIF + \text{관세액} + \text{소비세}) \times 17\%$	
	소비세	• 10 % - $(CIF + \text{관세액}) / (1 - 10\%) \times 10\%$			소비세	• 240위안/톤	

• 과실주 65%에 비하여 저렴하며, 와인 14%에 비하여 높은 관세
 • 이후 중국 상해 자유 무역지구 (Shanghai Free Trade Zone)에 대한 연구 필요성 대두

※ 출처: 국가질량검사검역총국 《신식품원료안전성검사관리방법》

3. 중국 통관 관련 정책

가. 중국 주류 위생표준 및 검역 기준

- 미주가 포함된 중국 발효주위생표준이 2013년 2월 1일 부터 새롭게 실시됨에 따라 국산 막걸리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
 - 발효주에 대해 정의를 내림: 발효주는 곡물, 과일, 유제품 등이 주 원료로 사용되었으며, 발효나 부분발효 양조를 통해 만들어진 알코올음료
 - 양조 술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, 위생물의 한도 수치가 수정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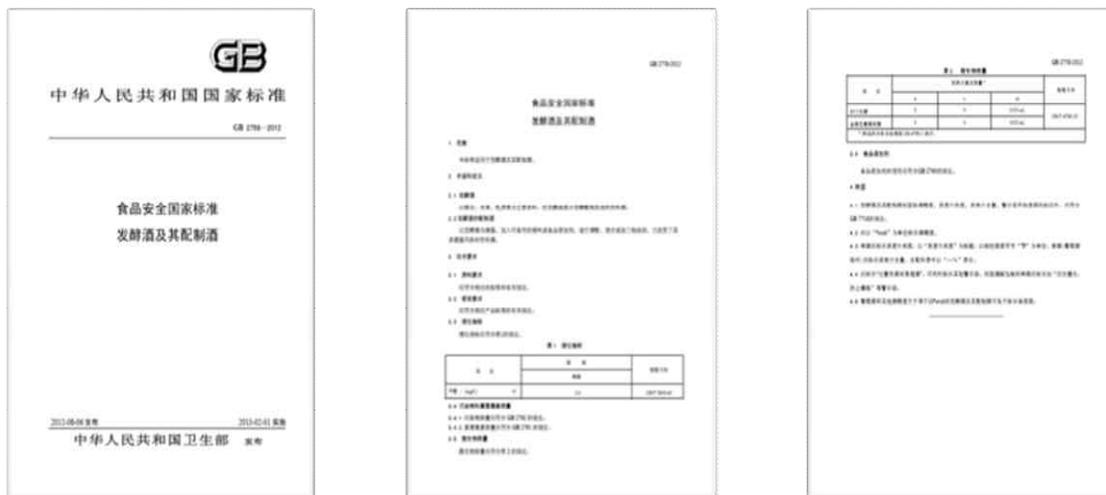
[표 2.7] 중국 발효주 위생표준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변경 전 (GB 2758-200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살균 막걸리의 경우 중국 전통 발효주(황주 등) 위생 기준에 준하여 적용 • 유산균이 대량 함유 된 생 막걸리의 경우 적용 표준 없이 수입 및 중국 내수 유통 불가
변경 후 (GB 2758-20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표시기(2012년 8월 6일), 발효시기(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) • 발효주 범주 재정립: 곡물, 과일, 유류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 과정을 거친 음용 주류 • 미생물 함량 기준 완화: 세균 총수 및 대장균군, 시겔라균 등의 미생물 함량 기준 완화

[표 2.8] 발효주 미생물 함량 기준 신규 비교

항목	이전 발효주 위생 표준 (GB 2758-2005)	변경 된 발효주 위생 표준 (GB 2758-2012)
세균 총 수(개/ml)	≤ 50	적용 기준 없음
대장균군(개/100ml)	≤ 3	적용 기준 없음
살모넬라균	불가	불가
금황색 포도구균	불가	불가
시겔라균	불가	적용 기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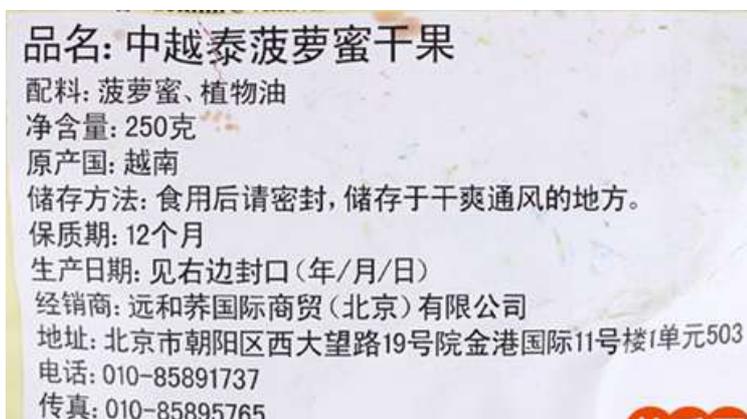
[그림 2.22] 개정 된 중국 발효주 위생 표준



나. 상표 제도

- 수입 사전 식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하나인 《사전포장식품상표통칙》(GB7718-2011)에 근거해 실행됨
 - “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포장식품”의 정의
 - * 하나,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혹은 식품 운영자(식당 서비스 포함)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
 - * 둘,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타 식품 생산자에게도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
 - 수입 사전포장식품은 반드시 원산지의 국가 또는 지명(예: 홍콩, 마카오, 타이완) 및 중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리 업체, 수입업체 또는 판매자의 이름, 주소, 연락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생산자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는 명시해서는 안 됨
 - 생산날짜는 사전 포장 식품의 최종 판매 제품이 만들어지는 날짜를 말함
 - * 구 《사전포장식품상표통칙》(GB7718-2004)에서의 포장날짜, 밀봉날짜는 본 표준에서는 “생산날짜”로 통일 됨
 - 중문 상표 부착시 식품 상표에 규범 된 한자를 사용하되 상품 표시는 포함해서는 안 됨. “규범 된 한자”는 《통용규범한자표》에 등록된 한자를 말하며, 번체자는 포함되지 않음. 그러나 식품 상표에는 규범 된 한자 및 번체자 사용 가능
 - 사전포장식품에 외국 명칭을 사용해도 되지만, 외국 명칭의 크기는 중문명칭의 크기보다 커서는 안 됨
 - 수입 사전식품은 상품표준번호 표시 생략 가능

[그림 2.23] 수입식품 상표부착 사례



- 점차 상표관리 작업에 관한 수속을 간소화 하는 추세
 - 2000년 국가국은 제 19호 《수출입식품표시관리방법》 발표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 전 사전 심사제도를 실시
 - 2006년 국가질검총국은 제 44호 《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상표 심사제도에 관한 공고》를 발표하여 이전의 수입전 사전 검사를 폐지하고, 상표 등록과 검사를 결합하여 기존의 수속 절차를 간소화
 - 2011년 국가질검총국은 제 59호 《수출입 사전식품 상표 운영관리 체계에 관한 공고》 발표하고 2011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상표관리 체계를 시행하였으며, 이 시스템상에 등록된 상표들은 이전과 같은 많은 양의 등록 서류들을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. 이 시스템상의 수입식품과 관련한 등록 정보는 전국 각지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관들에게 전달됨

다. 검험검역제도

-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은 《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》과 《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》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, 2000년 1월 1일부터 검험 검역을 합격한 수입 식품에 대해 동일한 CIQ마크 수여
 - CIQ마크를 받을 수 있는 식품 범위로는 주류, 음료류, 유제품류, 초콜릿 사탕류, 통조림류, 볶은 견과류 및 포장 식용유류 등이 있음

4. 수입 채널

가. 수입 채널

- 제1유형 : 일반 수출입 무역 회사
 - 수출입 무역회사는 본래 10-5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, 상무부 부속 기관 또는 한국 무역 협회 등 한국의 제조업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, 수출 상품 교역회 및 주류박람회 등을 통해 얻은 고객 자료를 이용하여 채널을 형성 및 확대하는 회사를 말함
- 제2유형: 한국계 수출입 회사
 -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말하며, 한국에서 생산 된 주류와 음료의 수입을 담당